



IMO 2008년 7월부터 보호도장기준 강제화

IACS 12월8일부터 CSR적용선박 조기 시행

국제선급협회(IACS)가 추진중인 밸러스트탱크 보호도장기준이 12월 8일 수주한 물량부터 벌크선과 탱커선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2월 8일 제82차 해사안전위원회(IMO/MSC82)를 개최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거나, 계약일이 없는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용골거치되는 선박, 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 1일이후 인도되는 모든 선박의 전용밸러스트 탱크와 150m이상 벌크선의 이중선측 공간에 보호도장 요건을 강제화하는 내용의 'SOLAS II-1/3-2'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IACS는 IMO협약 채택일인 2006년 12월 8일이후 계약되는 선박 중 지난 4월부터 공통구조규칙(CSR)을 적용받고 있는 90m이상의 벌커와 150m이상의 오일탱커에 대해 IMO협약 시행일보다 약 18개월 앞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ACS 규정은 IMO규정과 달리 강제규정은 아님지만 선박신조시 IACS규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험가입이 않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규정과 다름이 없어 새로운 밸러스트 탱크 도장기준에 대한 국내조선소와 선사들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보호도장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설비와 인스펙터(Inspector) 등 대대적인 시설과 인력 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조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클락슨은 지난 3월 CSR 적용으로 약 10% 정도의 신조선가 상승효과가 발생했지만 새로운 보호도장기준 적용은 CSR에 버금가는 선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 중국과 함께 보호도장기준 조기 적용을 반대하다가 최근 수용입장으로 돌아선 일본은 CSR과 마찬가지로 선가상승을 우려한 선주사들이 보호도장기준 조기 시행전에 대규모 벌크를 선발주하면서 벌커 수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오시마 조선과 유니버설조선 등은 최근 벌크선 수주가 크게 늘면서 인도일 기준으로 보호도장기준이 적용되는 2012년 7월1일 이전의 벌크선 수주량을 모두 채웠으며 일부 일본 중형조선소들은 2011년이후 인도조건의 벌크선 수주계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도장기준으로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조선소들의 경우 벌크와 탱커의 수주비중이 비교적 낮고 도장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그나마 영향이 덜하지만 벌크와 탱커 수주비중이 높은 중소형조선소들의 경우 IACS 보호도장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났다.